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할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대학(교)등에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라.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단체)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3. 관계법령

-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26조)
-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 적법성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담배자판기의 설치제한은 물론 금연홍보와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관련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음.

□ 필요성 부분은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제 금연환경 조성은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때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재정적 측면은

금연에 대한 주민홍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등에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기 편성된 금연클리닉 관련예산과 연계하여 활용할시 구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008. 4. 2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

《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